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1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50069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정○○
피 고	○○특별시 ○○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변 론 종 결	2023. 11. 24.
판 결 선 고	2024. 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15. 원고에게 한 취득세 40,529,100원, 농어촌특별세 2,026,455원, 지방교육세 4,052,910원의 경정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

1) 원고의 구체적인 경정청구 내용을 참작하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2. '온라인 쇼핑몰, 부가통신 대리점업,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 관련업과 컨설팅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20. 12. 29.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

나. 소외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2004. 6. 8. '온라인 쇼핑몰, 부가통신 대리점업,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 관련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사내이사는 C이다.

다. 원고는 2021. 1.경 ○○ ○○구 D건물, 제12층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21. 2. 19.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54,038,800원, 농어촌특별세 2,701,940원, 지방교육세 5,403,8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21. 3. 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40,529,100원, 농어촌특별세 2,026,455원, 지방교육세 4,052,91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3. 15. "B와 원고는 목적사업이 동일한 업종으로 동일한 건물의 호실에 실만을 달리하여 사업장을 두고 있고, 동일한 대표이사가 각 법인의 과점주주로 법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1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6.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B는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연구비카드 소지자들에게 연구비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을 찾아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반면, 원고는 일반 판매처들에게 전자결제대행사의 정보를 비교하여 최적의 회사를 추천하여 주고, 이를 통하여 판매처가 전자결제대행사를 선택하면 그 가입절차를 도와주고 가맹점으로부터 대금을 받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원고와 B는 사업구조와 매출처, 수익구조가 상이하다. 나아가 원고와 B는 서로 다른 물적, 인적자원을 이용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원고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1

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1호 본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1. 12. 28. 법률 제18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창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벤처기업에 대한 정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1

규정이 존재할 뿐 창업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은 없다.

나)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내용 및 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에서 말하는 '창업'은 원칙적으로 '벤처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나 같은 조 제6항 각 호에 열거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창업을 하더라도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것인바, 결국 이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창업으로 보아 세액 감면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설립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새로운 사업인지 아니면 기존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 추가 등에 불과한지는 해당 벤처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 또는 법인과 신설 중소기업의 출자자 구성, 전자가 후자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여한 정도, 양자가 운영하는 사업의 유사성과 관련성, 양자 사이의 거래 현황과 규모 및 인적·물적 설비를 공유하는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에 규정된 창업벤처중소기업에는 해당하나 원고의 설립은 기존 회사인 B의 사업을 확장한 경우에 해당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감면의 전제가 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1

가) 원고와 B는 모두 고객에게 인터넷 기반의 전자결제시스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두 업체의 업종은 모두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나) 원고의 설립 당시 원고와 B의 사내이사는 C로 동일하다. 원고의 설립 당시 본점소재지는 ○○ ○○구 F건물, 12층 G호이고, B의 본점소재지는 같은 건물 H호이다.

다) 원고와 B의 2019년도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은바, 원고의 주주는 C와 그 자녀들로 이루어져 있어 B의 과점주주인 C가 원고의 설립과 운영을 사실상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			B 주식회사		
주주명	지분(%)	비고	주주명	지분(%)	비고
I	40	C의 子	C	60	대표이사
J	40	C의 子	K	20	
C	20	대표이사	B(주)	20	

라) B는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연구비카드 소지자들에게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을 찾아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던 기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B의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기반으로 일반 판매처를 상대로 전자결재대행사를 연결해주는 원고를 설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1

판사 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1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1. 12. 28. 법률 제18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22. 6. 28. 대통령령 제3273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1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끝.